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9-16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1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8누5750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피항소인	1. A
	2. B
	[redacted]
피고, 항소인	[redacted]시장
제1심판결	[redacted]지방법원 2018. 7. 5. 선고 2018구합61506 판결
변 론 종 결	2019. 6. 12.
판 결 선 고	2019. 7. 10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9-16

피고가 2017. 7. 5. 원고들에 대하여 한,

가. [redacted]시 C에 있는 D건물 1동 6층 E호에 관한 2017년도 각 재산세(건축물) 2,798,970원 중 각 263,67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각 지방교육세 540,860원 중 각 33,8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,

나. 위 같은 건물 1동 6층 F호에 관한 2017년도 각 재산세(건축물) 3,175,730원 중 각 299,1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각 지방교육세 613,660원 중 각 38,3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 등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그 이유 부분(그 별지를 포함하되, '3. 결론' 부분은 제외)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수정하는 부분

○ 3쪽 글상자 아래 4행 '가지번호 포함' 오른쪽에 ',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'를 추가한다.

○ 4쪽 아래에서 3행 '그 결과' 오른쪽에 '2014. 5. 14.'를 추가한다.

○ 5쪽 6행 '2016. 6.30.'을 '2016. 6. 30.'로 고친다.

○ 5쪽 7행 '2016. 6. 1.'을 '2016. 7. 1.'로 고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9-16

○ 6쪽 글상자 아래 1행 '8호증'을 '8, 14호증'으로 고친다.

○ 6쪽 글상자 아래 1~2행 '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'을 삭제한다.

○ 7쪽 4행 '을 제1호증, 을 제5, 6호증'을 '을 제1, 5, 6호증'으로 고친다.

○ 7쪽 5행 '증인 M의 증언'을 '제1심 증인 M, 이 법원 증인 P의 각 증언'으로 고친다.

○ 7쪽 아래에서 9~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.

【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을 제1, 6 내지 8호증, 을 제9호증의 3, 4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 증인 P의 증언만으로는,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1, 2영업장이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】

○ 7쪽 아래에서 7~8행 '갑 제13호증, 을 제1호증, 을 제6호증의 1의 각 영상 및 증인 M의 증언'을 '갑 제6, 8, 13, 14, 16, 17, 19, 20호증, 을 제1,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 증인 M, 이 법원 증인 P의 각 증언'으로 고친다.

○ 8쪽 아래에서 6~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.

【 ③ 피고가 2013. 9. 16. 쟁점1, 2영업장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 유흥주점 중과세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4. 5. 14.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한 점(갑 제14호증), 피고는 2016년 및 2018년에 이루어진 쟁점1, 2영업장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쟁점1, 2영업장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점(을 제7, 8호증, 을 제9호증의 3, 4)에 비추어 보면, 피고 스스로도 2013, 2016, 2018년의 경우 쟁점1, 2영업장을 별개의 유흥주점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.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17년 당시에는 상황이 달랐다고 주장하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9-16

나, 2013, 2016, 2018년경에는 별개의 유흥주점으로 본 것을 2017년에만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야 할 만큼 건축물의 구조변경 등의 유의미한 사정변경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④ 쟁점1영업장과 쟁점2영업장은 사업자등록, 임대차계약체결, 주류 구입 및 관리비 납부를 별개로 해온바(갑 제6, 8, 16, 17, 19, 20호증), 각 영업장의 손익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손익의 귀속자가 단독으로 되어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다. 】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동오

판사 박재우

판사 박해빈